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1928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욱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730,894원과 그중 183,595,840원에 대하여 2018.7. 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의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B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피보험자인 E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원고가 E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구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E이 피고 B의 노무자들에게 대지급한 노무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F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체당금 등을 받는 방법으로 회수하고도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받는 것은 동일한 채권에 대한 이중지급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직원들이 피고 B 소속 인부들에게 대지급한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상당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10)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 B가 소속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인건비(임금)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장비비, 자재대 등 거래대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도급업체인 E이 수급업체인 피고 B에게 동일한 주계약(공사도급계약)에관하여 F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이행증권 이외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 2개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 사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2건은 주계약이나 담보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동일한 주계약에 대한 중복 보증보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계약금액 68,454,569원인 보증보험은 G블럭 공사에 관한 것이고, 계약금액 165,619,503원인 보증보험은 H블럭 공사에 관한 것이다). 또한 F공제조합의 보증상품과 원고의 보증보험증권은 담보 내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고, 그 밖에 E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 B에게 이중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이 담보하는 대상이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보증보험증권이 무효가 된다고 볼수도 없다. 나아가 E이 피고 B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F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보전을 받고도 원고에게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730,894원과 그중 183,595,84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8.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중열

[별지]

청 구 원 인

1. 본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주)B [] (이하 피고회사라 함)는 소외 (주)E [] (이하 피보험자라 함)과 G [] H [] 공동주역 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건설하도급 가성급 미지급에 따른 대지급 채무 지급보증의 담보로 원고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 보험계약내용과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바 있음.

보 험 계 약 내 용

	증 권 번 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I []	(주)B []	(주)E []	금 68,454,569원	2014.3.31.- 2015.11.30.
2	J []	(주)B []	(주)E []	금 165,619,503원	2014.3.31.- 2015.11.30.

2. 위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위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연 12%를 적용함.)

3. 피고 C [], D []는 위 2건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4.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가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1번 보험계약에 대하여 2015. 11. 13. 금 68,454,569원을, 위 2번 보험계약에 대하여 2015. 11. 13. 금 164,611,431원을 피보험자에게 각 지급하였음.

5.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2번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일변제로 49,470,160원만을 일부변제 하였을 뿐, 1번 계약에 대한 지급보험금 및 2번 보험계약에 대한 나머지 원금의 합계금 183,595,840원과 2018. 6. 30.까지 지연손해금 56,135,054원의 합계금 239,730,894원 및 위 지급보험금 합계금에 대한 2018. 7. 1.이후 지연손해금을 각 변제치 아니하고 있음.

6. 그러므로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청구위자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합의한 보증보험약관서의 합의관할에 의거 귀원에 본소를 제기함.